

2023년도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계획 공고

2023년도 시행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시험일시

□ 실기시험 응시자는 아래의 개인별 일정에 명시된 일시에 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2023. 5. 25(목) 14:00~

응시대상자 (27명)				응시일시	체력검사등록
66800006	66800015	66800019	66800023	'23.5.25(목) 14:00~	시험 당일 13:30부터
66800026	66800031	66800046	66800053		
66800054	66800061	66800063	66839023		
66839029	66851002	66851007	66857002		
66862011	66874002	66874017	66874026		
66884004	66884007	66884016	66884023		
66894015	66935002	66984004			

2.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 발표 : 2023. 5. 30(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3. 시험장소 : 정부세종청사 8동(우정사업본부) 1층 다목적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4. 응시대상 : '23년도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붙임 1] 참조

6. 도핑테스트 실시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 방법 / 대상자 : 소변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 체력검사 대상자
- 금지약물 ·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방법 고시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7.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등

8.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 시간을 지정하여 체력시험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안팎에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생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에 지정된 날짜의 지정된 시간에 응시하여야 하고, 응시 대상자는 **13시 30분까지** 시험장소인 정부세종청사 8동(우정사업본부) 1층 다목적홀에 **도착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서 출력 가능(상세 내용은 인사혁신처 문의)
-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우천시에도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실기시험 이전이나 실시 도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실기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실기시험 중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실기시험 종목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예규 제125호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을 참고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측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윗몸일으키기 지지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3 참조)
- 도핑테스트 동의서는 체력검사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양식 당일배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시험장소 및 교통편은 [붙임 5]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리 시험장소·교통편·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5) 및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체력검사의 종목(측정 단위)	성별	합격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남자	42회 이상
	여자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4회 이상
	여자	23회 이상
악력(kg)	남자	43.6kg 이상
	여자	25.2kg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남자	13.60초 미만
	여자	16.21초 미만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남자	11.9초 이상
	여자	8.5초 이상

▷ 비고

-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1.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회)

- 가. 응시자는 20미터 코스에 표시세움대가 설치된 출발선에서 출발신호원이 '준비' 구령 후 “출발” 신호를 하면 출발하여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반대편 도착점까지 달린다.
- 나. 반대편 도착점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 다. 신호음이 울리면 최초 출발선을 향해 달린다.
- 라. 신호음이 울렸을 때 목표지점(반대편 도착점이나 최초 출발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측정을 종료한다.
- 마.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다. 다만, 목표지점까지 도착한 후 방향을 바꾸어 달렸을 경우에 측정 횟수로 인정된다.
- 바.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표 2의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점증속도표에 따른 속도에 맞추어 20미터 거리 왕복달리기를 계속 실시한다.
- 사. 기록은 20미터 거리를 통과한 횟수로 한다.

2. 윗몸일으키기(회/초)

- 가. 응시자는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윗몸일으키기지지대에 대고 누워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발목 고정용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한다.

- 나.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 팔꿈치를 양 무릎에 닿도록 한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 다.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 횟수만 인정한다.
- 라.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마. 기록은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로 한다.

3. 악력(킬로그램)

- 가.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중에서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선택한다.
- 나. 응시자는 측정기의 기록을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잡는다.
- 다. 검지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잡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다.
- 라. 응시자는 똑바로 선 자세로 양발을 어깨 폭 만큼 벌린 후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 마. 응시자는 최대의 힘으로 측정기기를 잡는다.
- 바. 측정은 2회 실시한다.
- 사. 기록은 2회의 측정기록 중 유리한 측정값으로 하고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재한다.
- 아.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 가. 응시자는 선 자세로 출발선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앞으로 달려가 10미터 전방의 반원 내에 있는 목표물 하나를 집어 출발선 쪽의 반원으로 가져온다.

나. 다시 달려가서 나머지 하나의 목표물을 가져온다.

다.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라. 응시자가 두개의 목표물을 나르는데 소요된 시간을 0.01초 단위로 기재한다.

마. 측정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이하를 버리고 산출한다.

5. 눈감고외발서기(초)

가. 응시자는 선 자세로 측정을 하기전에 자신이 편한 쪽 발을 선택한다.

나. 계측원의 첫 번째 호각소리에 응시자는 양팔을 벌리고 한 쪽 다리를 직각이 되게 앞으로 들어 올린다.

다. 계측원의 두 번째 호각소리에 응시자는 양쪽 눈을 감는다. 기록은 이 시점부터 재기 시작하며 응시자가 들고 있던 발이 땅에 닿거나 서 있는 발이 최초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까지 기록을 쟀다.

라. 기록은 0.1초 단위로 기재하며 두 번 측정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철도경찰직 공무원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 실기시험(체력검사) 참가자 전원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붙임4)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성 별 : 남 ☐ 여 ☐
3. 생년월일 :	4. 응시번호 :
5. 연 락 처 :	6. 이 때 일 :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화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 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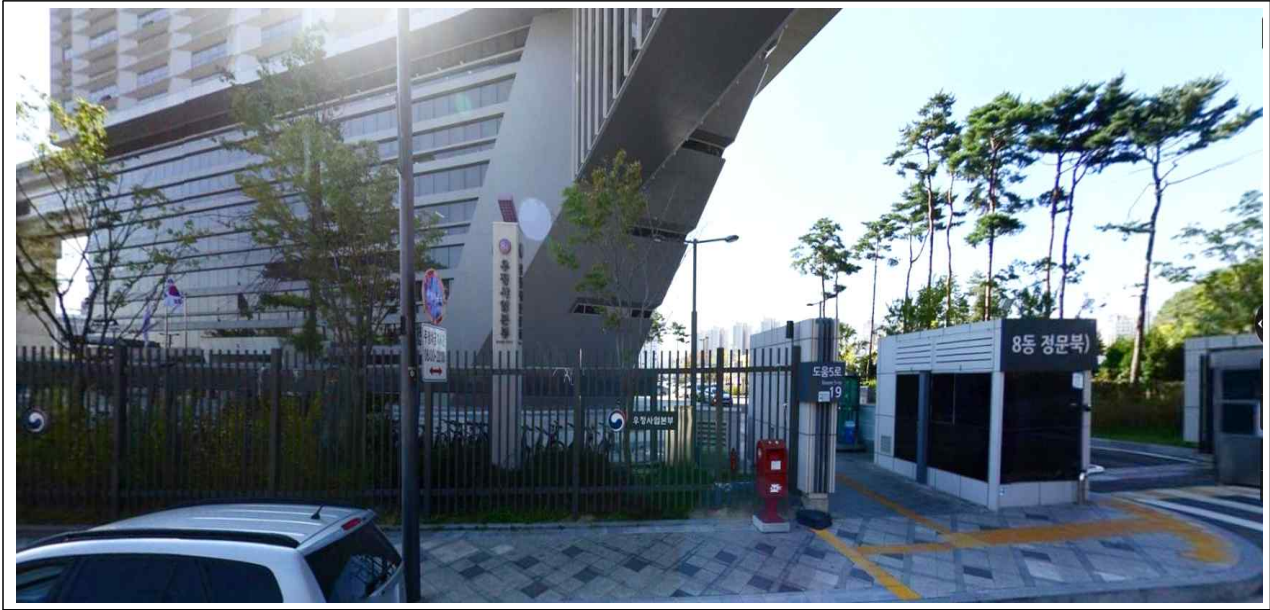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니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실기시험 시험장 주소 및 교통편

□ 명 칭 : 정부세종청사 8동(우정사업본부) 1층 다목적홀

< 시험장 전경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1층 다목적홀

□ 전 화 : 044 - 201 - 3165, 4607 / 팩 스 : 044 - 201 - 5671

□ 교통편 : 버스, 자가용 등

<버스 이용>

- (오송역) BRT(B1, B2, B3)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북측) 하차
- (조치원역) 버스터미널 500번, 550번, 551번, 601번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북측) 하차
- (대전역) BRT(B1)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북측) 하차 또는
대전지하철 → 반석역(6번출구) → BRT(B2) 이용,
정부세종청사(북측) 하차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070-4904-3262) 하차 후 BRT 또는 601번, 430번, 991번 버스 이용, 세종청사터미널(정부 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 044-200-2114)하차 후 도보 이동

<승용차 이용>

- (경부고속도로)
 - 남청주IC(구 청원IC) 부강 국지도 96호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청주IC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1번 국도(조치원 방향)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논산천안 고속도로)
 - 정안IC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은하수공원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당진영덕 고속도로)
 - 서세종IC(동공주IC) 36번 국도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남세종IC(북유성IC) 1번 국도(조치원방향) 정부세종청사(8동, 우정사업본부)

< 정부세종청사 8동(우정사업본부) 약도 >

